

의안번호	제 268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12월 23일 (제 305 회)

**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1년 12월 8일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12. 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·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기능직지방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및 10급 폐지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, 임용권이 달라 발생하는 기능직지방공무원 승진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장에게 위임된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무 중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(안 제5조제1호자목)
- 나. 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기능직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

휴직 · 복직 · 직위해제 · 파견 · 의원면직 · 퇴직 · 대우공무원
선발 ·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, 경징계로
제한함(안 제5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총무과, 행정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11.11.4. ~ 2011.11.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평가결과 해당없음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
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

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7. 지역교육청·소속기관·공립 관할학교 기능직지방공무원의 관내전
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·복직·직위해제·파견·의원면직·퇴직·대
우공무원 선발·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·경징계
단,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외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"관할학교"라 한다)의 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아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자. <u>관할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지역교육청·소속기관·공립 관할학교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<u>임용</u>(단,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외)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자. <u>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지역교육청·소속기관·공립 관할학교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<u>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·복직·직위해제·과건·의원면직·퇴직·대우공무원 선발·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·경징계</u> 단,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외</p>

관 계 법 령

□ 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**[법률 제10046호, 2010. 2. 26.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□ 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**[대통령령 제22230호, 2010. 6.29.]

제6조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
5.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
6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